■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5.9.25.>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중개 허가 (신청)서
Brokering License (Application)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9일

중개자 Broker	중개업 신고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상호 Company Name		대표자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소재지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실무담당자	성명 Name	전화번호 Telephone
		전자우편주소 E-mail	
수출자 Exporter	상호 Company Name		대표자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소재지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실무담당자	성명 Name	전화번호 Telephone
		전자우편주소 E-mail	
수입자 Importer	상호 Company Name		성명 Name
	소재지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 수입자와 같을 시 "수입자와 동"으로 기재 If same as Importer, write "same as Importer"

최종 수하인 Ultimate Consignee	상호 Company Name	성명 Name
	소재지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 최종 수하인과 같을 시 "최종수하인과 동"으로 기재 If same as Ultimate Consignee, write "same as Ultimate Consignee"

※ 최종 사용자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별지 제출"로 적고, 별지에 일련번호, 최종사용자의 상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

If there are two or more End-Users, write "refer to the annex" and provide in the Annex all the end-users information (Name of firm, Address, Representative, Telephone).

최종사용자 End-User	상호 Company Name	성명 Name
	소재지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제조자 Manufacturer	상호 Company Name	성명 Name
	소재지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허가신청구분 (해당란에 √ 표) Type of Application (mark √ on the box)	[ ] 주요방산물자 Major Defense Material [ ] 일반방산물자 General Defense Material [ ] 국방과학기술 Defense Technology [ ] 절충교역 중개 Brokering by Offset Program (해당 시 관련사업명 Name of Original Program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출품목 Exports	원산지 Country of Origin		HS 번호 HS Code
	물자/기술 Classification of Material & Tech		
	품명 및 규격 Item/Description		
	수량(단위) Quantity(Unit)	단가 Unit Price	총액 Total Price

계약내용 Agreement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Letter of Credit No. or Contract No.
	가격조건 Terms of Price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 Terms & Period of Payment
	최종 목적지 국가 및 도착항 Country of Ultimate Destination/Port of Destination
	경유・환적지 국가 및 항구 Country & Port of Transship or by way

허가내용 Permits require	허가번호 License No.	허가조건 License Condition
	최종사용용도 End-use	허가유효기간 Terms of Validity
	사후관리은행 Beneficiary's Bank	
	기타 Additional Information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중개허가를 신청합니다.

I apply for brokering license pursuant to Section 2, Article 57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Section 3, Article 6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년 월 일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방위사업청장 귀하

Minister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수입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최종 목적지국가가 아닌 국가나 지역으로 허가 받은 전략물자를 재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거래 중개를 허가합니다.

On condition that the importer, the Ultimate Consignee or the End-User would not re-export the approved items to countries or regions other than the country of Ultimate Destination stated above,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above items to be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

년 월 일

방위사업청장 직인

Minister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Official Stamp

첨부서류	제3쪽 참조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거래중개계약서 또는 거래중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 거래중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거래중개나 해당기술을 직접 중개하는 경우에는 영 제36조에 따라 기술 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와 기술보유기관이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 거래중개를 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거래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거래중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 거래중개품목의 인도일정 설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심 사	➔	심사결과 통보
신청인		방위사업청 (수출허가 담당부서)		